# 19세기 전반 평안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 -『平安監營啓錄』 순조대 기사 분석 -

심 재 우**

1. 머리말
2. 조선시대 유배형의 성격과 유배지로서의 평안도
   1) 조선시대 유배형 이해의 현황과 쟁점
   2) 분석대상 자료와 유배지로서의 평안도
3. 평안도 사례를 통해 본 19세기 전반 유배의 실제
   1)『평안감영계록』 순조대 유배 기사의 내용
   2)『평안감영계록』 분석을 통한 평안도 유배의 양상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의 대표적 형벌 가운데 하나인 流刑, 즉 유배형은 '귀양'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형벌로서의 유배형은 한마디로 죄인을 먼 지역에 유폐시켜 종신토록 그 고을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대명률』을 계수하여 형법의 일반법으로 채택하였고, 조선에서 새로 만든 수교 등을 모아 만든 조선의 법전 조항을 특별법으로 하여 형법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벌도 기본적으로 『대명률』에 명시된 笞·杖·徒·流·死의 5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5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태·장형은 신체형, 도·류형은 자유형, 사형은 생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1-C02).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부교수.

특히 유배형은 오늘날의 형벌과 비교해본다면 '무기금고'형과 유사한 독특한 형태의 자유형이다. 현대에 와서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 형벌 체계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동양에서는 도형과 유형의 역사가 꽤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문에 일찍이 일본의 유명한 중국 법사학자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법문화권에서 자유형의 발달은 주목되는 현상으로 진단한 바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배형이 일찍부터 발달한 데 반해, 유럽의 경우 자유형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16세기 런던의 브라이드웰 懲治場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1)]

물론 유럽의 근대적 감옥에 가까운 죄수 감금 시설인 懲治場 제도를 죄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 조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유배형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조선왕조, 나아가 전근대 중국과 조선의 처벌체계 속에서 유배형이 갖는 위상과 성격을 추적하는 작업은 동일한 법률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동아시아 형벌체계, 처벌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고도 흥미로운 작업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유배제도와 유배형 운영상의 특징은 얼마나 밝혀졌는가? 불행하게도 조선시대 법제사 영역, 구체적으로 형사 사법제도 운영 양상은 중요성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유배형의 운영과 집행의 실상에 대해서도 본격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유배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배형이 갖는 독특한 형벌로서의 성격 때문에, 또한 조선시대 정쟁의 와중에서 많은 수의 양반 관료들이 유배를 경험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2)] 유배형의 의미와 제도에 대한 검토가 최근 들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먼저, 국문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유배인 문집이나 유배가사를 이용한 유배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 성과가 대부분 문학사 연구라는 틀에서 다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유배 지식인들의 유배 생활이나 유배 노정에서의 작품을 통해 당시 유배형의 실상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역사학계의 경우 얼마 전에 두 편의 노작이 제출되었다. 하나는 유배인의 일기를 분석하여 유배인의 실제 유배 노정에 대해 생생하게 접근한 성과이며,[3)] 다른

1) 仁井田陞, 1959『中國法制史硏究 : 刑法』, 東京大學出版會, 47-56면 참조.

2) 필자는 조선전기 규장각 소장 문집을 통해 실제로 많은 수의 관료들이 유배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심재우, 2000「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국사관논총』 92).

하나는 유배지에서의 생활 모습을 유배가사를 통해 복원해낸 것이다.[4] 이들 두 성과를 통해 유배형의 특징과 유배 노정, 유배지 생활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유배일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한 유배생활상의 복원 시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유배지에 대한 사례 연구 작업 등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5] 이로써 조선시대 유배형의 실상과 유배인의 삶에 한결 나가선 느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조선시대 유배형의 전모가 여전히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 대상이 주로 양반, 그 중에서도 관리들에 국한되었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양반이 아닌 일반 평·천민들도 유배형의 대상이었으며, 지방 감영 차원에서 조정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觀察使가 직권으로 일반 刑事犯을 유배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들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진 유배인의 실상, 유배 행정까지 시야에 넣어야만 유배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6]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유배형의 성격, 나아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던 지방에서의 유배 행정을 법제사적 시각에서 살피기 위해 감영에서 조정에 올린 啓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지방 단위의 유배형 집행 모습을 살피기 위해 현존하는 啓錄 가운데 유배 관련 기사가 풍부하고 시계열이 충실한 규장각 소장 19세기의 『平安監營啓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자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본고는 비록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사례 분석에 불과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 유배지 분포, 유배인의 죄명, 유배 행정 등 조선후기 유배형의 성격과 유배 운영 시스템의 이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3) 김경숙, 1998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55·56

4) 정연식, 2002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 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9,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5) 전자의 성과로는 『北窩錄』의 분석을 통하여 함경도 안변 지역에 유배를 떠났던 유생 李必益의 유배지 생활을 다룬 김경숙의 연구(김경숙, 2006 「17세기 후반 유생 이필익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 후자의 성과는 조선시대 섬 지역 유배의 추이를 분석한 장선영의 연구(장선영, 2001 「조선시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전라남도 지역 유배인의 실태와 유배자료의 현황을 분석한 김경옥의 연구(김경옥, 2010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역사학연구』 40) 등을 들 수 있다.

6)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현에 유배온 인물들의 존재 양태를 추적한 필자의 연구는 연구 대상이 양반 뿐 아니라 평·천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호적 자료를 주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유배인의 실생활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심재우, 2001 「조선후기 丹城 지역 定配人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102).

## 2. 조선시대 유배형의 성격과 유배지로서의 평안도

### 1) 조선시대 유배형 이해의 현황과 쟁점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유배형의 기본 성격과 규정, 유배 대상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 시점에서 유배형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와 쟁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태·장·도·류·사의 5형의 체계는 중국 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시대에 정형화되었으며, 송원 시기에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명청 시기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에서 적용하여 사용한 『大明律』에 등장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형벌도 5刑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5형에서 유배형은 死刑 다음으로 무거운 종신형이라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잊어서는 곤란한 것은 유배형 판결의 주체에 대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조선시대 재판의 위계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청나라의 경우 토지, 재산 등 민사 소송은 '州縣自理'에 속하여 州縣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현에서는 笞·杖刑까지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徒刑 이상의 형벌에 관련되는 안건의 경우 주현에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總督·巡撫(인명사건으로 인한 徒刑 부과), 刑部(流·軍·遣)가 처리했으며, 死刑 안건은 반드시 황제에게까지 보고되어야 했다.[7]

조선의 재판 제도도 이와 유사하여 지방관은 고을민이 올린 소장을 처리하고 笞刑의 형벌은 직접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관찰사와 형조는 流刑까지의 直斷權을 행사하였고,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왕만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8] 이와 같은 법전 규정에 의거하면 유배형의 집행 주체는 지방의 관찰사, 중앙의 형조판서, 국왕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범죄가 형률상 유배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형조판서가, 지방 군현의 사건은 관할 관찰사가 국왕에 보고하지 않고도 직접 유배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반면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나 역모 등 정치범의 경우 최고 재판관에 해당하는 국왕에게 보고되는데, 국왕이 사형을 감하여 유배형에 처하는 경우(減死定配)도 있었다. 이처럼 유

7) 김선혜, 2007 「청대 형사 재판자료의 현황과 연구성과」 『동아시아 판례 및 법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2면.

8) 『經國大典』 권5, 형전 「推斷」

배형의 집행은 최고 재판관인 국왕,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형조판서·관찰사의 두 계통에서 이루어졌다.

그간의 유배형 연구는 정쟁이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국왕의 확정 판결로 유배형이 확정된 양반 관리에 집중되었다. 관리들의 경우 유배에 관한 기록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조와 관찰사, 특히 8도 관찰사가 직접 처단한 유배형의 대상자, 유배의 성격과 특징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유배형의 내용이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배지 선정 문제이다. 『대명률』에 의하면 유배형은 장100 유2000리, 장100 유2500리, 장100 유3000리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은 국토가 좁아 그대로 시행할 수 없었고, 기존 연구를 통해 죄수의 거주지별로 죄의 등급에 따라 유배지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음이 밝혀졌다. 그것이 세종 12년 마련된 <표 1>과 같다.

<표 1> 세종 12년 유배지 배정 기준(1息=30里)[9]

| 출발지 | 流二千里 | 流二千五百里 | 流三千里 |
|---|---|---|---|
| 京城·留後司·京畿 | 경상·전라·평안·함길도/20息 밖 | 경상·전라·평안·함길도/25息 밖 | 경상·전라·평안·함길도/30息 밖 해변 |
| 忠淸道 | 경상·전라·강원·함길도/20息 밖 | 함길도/25息 밖 | 함길도/30息 |
| 慶尙道 | 전라·강원·함길도/20息 밖 | 함길도/25息 밖 | 함길도/30息 밖 |
| 全羅道 | 경상·강원도/20息 밖 | 강원·함길도/25息 밖 | 강원·함길도/30息 밖 해변 |
| 江原道 | 경상·황해도/20息 밖 | 전라·평안도/25息 밖 | 전라·평안도/30息 밖 해변 |
| 黃海道 | 강원·평안도/20息 밖 | 강원·함길도/25息 밖 | 강원·함길도/30息 밖 해변 |
| 咸吉道 | 강원·평안도/20息 밖 | 경상·전라도/25息 밖 | 경상·전라도/30息 밖 해변 |
| 平安道 | 황해·함길도/20息 밖 | 강원도/25息 밖 | 강원도/30息 밖 해변 |

유배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配所를 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세종대의 규정에는 섬 지역으로의 유배 규정은 없지만 조선후기에 가면서 島嶼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많은 섬들이

9) 『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 윤12월 정미. 김경숙, 앞의 논문(1998), <표 1>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함.

유배지로 선정되었고, 애초 유배지에 빠져 있던 경기도와 충청도에도 유배를 보내는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오면 유배지 배정과 관련한 세종 12년의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들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이어 현종대에 유배 죄수들을 반드시 千里 밖으로 정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숙종대에는 제주도와 서북인은 유배를 보내더라도 本道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영조 때에는 極惡한 섬 지역에 대한 유배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정조 때에는 재해가 심한 고을에 유배인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확인된다.[10] 그렇지만 조선후기에 유배지 배정과 관련한 새로운 종합적인 원칙이 새로 마련되었는지, 유배지를 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하나 유배인이 유배지로 압송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압송관과 유배 노정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후기 유배인을 유배지까지 호송하는 압송관에 관한 사항은 영조대의 『續大典』과 19세기에 만들어진 『義禁府路程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기록을 정리하면 첫째, 관직자의 發配는 의금부에서 관할하는데, 정2품 이상은 의금부 都事, 종2품부터 정3품 당상관까지는 書吏, 정3품 당하관 이하는 羅將이 압송한다. 둘째, 관직이 없는 자의 發配는 형조에서 관할하여 京驛子를 비롯한 지나는 고을의 驛子가 압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1]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추적하다보면 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나오므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보다 축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배 노정은 앞선 소개한 김경숙의 선행 연구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경숙은 유배일기의 기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조선후기에는 대략 하루 평균 80-90리를 가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정한 것과 달리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신분 및 위리안치 여부에 따라 거리의 加減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12] 이상 압송관, 유배 노정 등 유배 행정에 관한 내용도 현재까진 국왕에 의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유배가는 사례가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의 유배형의 집행, 유배 행정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유배형의 특징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유배인에 대한 대우, 유배지에서의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에 대한 고찰이다. 유배지에 도착한 유배인들에 대

10) 자세한 수교의 제정 연대, 수록 법전 등에 대해서는 김경숙, 앞의 논문(1998), 372-373면 및 심재우, 앞의 논문(2000), 206-207면 참조.

11) 『續大典』 권5, 刑典 「推斷」 및 『義禁府路程記』(奎 19531) 「拿押式」 참조.

12) 김경숙, 앞의 논문(1998), 390-392면

해 수령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保授主人을 지정하였다. 이 때 보수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유배생활의 향배가 결정되기도 하였다는 점, 매달 초하루와 보름 정기적인 點考를 받는 것 외에는 유배인의 고을 안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웠다는 점, 권세가인가 실세한 죄인인가에 따라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천차만별이었다는 점 또한 최근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이다.[13)]

다만 앞서 유배 행정, 유배 대상에 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의 유배생활은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문집, 일기 등 기록을 남기지 않은 유배인들의 모습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발굴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상 개괄적으로 유배형 관련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유배형에 대한 검토는 대상자는 중앙의 관리, 판결 주체는 국왕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 본고가 지방 감영 사례를 주목하여 지방사회 유배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일차적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연구사의 공백 때문이다.

덧붙여서 유배형의 성격과 관련하여 또 하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은 도형과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래 노역 유무가 徒刑과 流刑의 형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즉 徒刑과 流刑은 모두 자유형이면서도 노역 부과 유무에 따라 徒刑은 노역형, 流刑은 추방형으로 나뉜다. 또한 형기가 정해져있지 않은 종신형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 반면, 노역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으로 정해져 있었던 徒刑은 지금과 같은 유기 징역형의 성격을 지녔다.

실제 조선초기에는 도형 죄인에 대한 노역 부과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세종 때 徒役人이 서울, 지방의 각종 관청에 배속되어 廳直, 庭爐干, 擣砧軍 등 잡역부로서 다양한 노역에 종사케 하거나, 각 驛의 驛日守로 배속하는 등 도형에 노역이 부과된 것이 기록에 나오기 때문이다.[14)]

그런데 徒刑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해 勞役 부과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노역의 내용이 시기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도역 죄인에게 별다른 노역을 부과하지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이다.[15)] 애초 종신형이었던

---

13) 조선후기 유배생활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정연식, 앞의 논문(2002)에서 종합적으로 수행되었다.

14) 矢木毅, 1996「朝鮮初期の徒流刑について」『前近代中國の刑罰』,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469-472면. 조선초기 도형 죄수에 대한 노역 부과 사례는 세종대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세조대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5월 신묘조 참조.

15) 조선후기 도형 죄수에게 노역이 부과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오갑균은 일부 감영 자료에 徒刑에 처해져 配所에 온 죄인에 대해 徒役에 처한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시 실제 노역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오갑균, 1995「관찰사의 사법적 기능」『조선시

유배형의 경우도 빈번한 사면령으로 인해 유배인들이 配所에서 중간에 풀려나는 일이 잦았다.

현재로선 조선후기에 와서 도형과 유배형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집행되지 않고, 이 둘의 구분이 애매해져 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 도형 죄인이 어떻게 생활하였고 유배 죄인과 달리 어떻게 관리되었는가가 의문이다. 이처럼 도형과 유배형의 구분에 관한 문제 역시 유배형 이해의 중요 쟁점의 하나이므로 향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2) 분석대상 자료와 유배지로서의 평안도

앞에서 본고의 사례 분석에 앞서 조선시대 유배형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특히 필자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형사 잡범의 유배형 집행 사례 등을 좀더 추적해야만 조선에서 형벌로서의 유배형이 갖는 의미와 유배행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록 기록은 정치범에 대한 것이 많지만, 현실에선 지방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관찰사에 의해 유배형에 처해지는 죄인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평안도관찰사의 기록을 모은 『평안감영계록』을 선택한 이유와 유배지로서 평안도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료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일기나 문집 등 유배인의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특징 지역이나 특정 시기의 유배행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찬 자료를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후기 유배형 관련 기록으로 필자가 주목하는 관찬 기록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 연대기 자료이다. 연대기에는 조정에서의 사법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유배형 집행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게 실려 있어 이 분야 연구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의금부를 거쳐 국왕이 판결한 정치범에 관한 기록이 상세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형조나 지방 유배인 정보는 소략한 것이 약점이다.

둘째,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형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하여 처리한 옥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규장각 소장 『秋曹決獄錄』도 흥미로운 자료이다. 『추조결옥록』은 모두 43책으로 1822년부터 1893년에 걸쳐 있는데, 원래는 정조 즉위년부터 고종 때까지 1년에 1책씩 편집했던 것으로 보인다.[16] 이 책은 각 지역에 발생한 사

---

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208면).

건으로 형조를 거쳐 처리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고의 관심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정배죄인의 현황과 이들의 석방에 관한 내용이 주목된다. 다만 낙질본이라는 점, 그리고 유배행정 전반은 파악하기 어렵고 정배인의 석방 정보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셋째, 각 지방 관찰사가 조정에 올린 狀啓 등을 편집한 啓錄類 자료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계록 자료의 대상 시기는 19세기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定配人의 到配日·罪目·유배지 등에 관한 월례 혹은 수시 보고가 적혀 있고 내용도 매우 풍부하다.

이상 유배형 연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는데, 이들 자료를 다같이 살펴보고 교차 검토해보면 유배행정 전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세 가지 기록을 모두 검토할 여력이 없으므로, 우선 지방감영에서의 유배행정을 밝혀줄 감영 계록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현존 감영계록 자료는 대부분 19세기의 것이며, 누락된 연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기록된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현존 계록 중에서 유배 관련 기록이 비교적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시계열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평안감영계록』을 선택하였다. 『평안감영계록』은 1830년(순조 30) 8월부터 1884년(고종 21) 8월까지 평안감영에서 조정에 올린 狀啓를 모은 37책의 거질인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필자는 이 가운데 1830년부터 1834년에 걸쳐 모두 29개월간의 순조대의 기사를 적은 총 5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17]

그럼 평안도는 유배지로서 어떤 곳이었을까? 평안도 지역은 삼남 지역과 달리 토착 지배세력이 건국 직후 확고하게 성립하지 못하여,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달리 사족 및 사족 중심의 문화가 존재하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지역이 위치한 특성상 17세기 병자호란 등 전란의 피해를 크게 입었고 사행로와 국가 방어기지로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었고, 조선후기 청과의 교역 등이 시작되면서 상업이 크게 발전한 지역이다.[18]

---

16) 『추조결옥록』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분석은 최근 유승희에 의해 이루어졌다(유승희, 2010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추조결옥록』의 편찬」 『서지학연구』 46).

17) 『평안감영계록』은 규장각(奎 15110, 37책)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29-33(평안도편1-5, 1988)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 책의 수록된 시기는 제1책(1830년 8~12월), 제2책(1831년 7~12월), 제3책(1833년 1~6월), 제4책(1833년 7~12월), 제5책(1834년 7~12월)이며, 중간에 1831년 1~6월, 1832년 1~12월, 1833년 1~6월, 1834년 1~6월이 누락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평안도관찰사가 도내로 귀양온 유배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본고에서는 영인본 『각사등록』 29집을 활용하였다.

유배지로서의 평안도는 중대 정치범을 관내에 보내지 않도록 했다는 점 외에 다른 道와 큰 차이는 없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에 전국의 모든 군현이 사실상 유배지였다. 조선 중기 이후 전라도의 도서 지역, 함경도 변경 지역 등이 유배지로서 자주 이용되었지만 평안도의 여러 군현에도 줄곧 유배인이 배정되곤 하였다.

앞서 <표 1>에서 소개한 세종 12년의 유배지 규정을 상기해보면 세종대에는 유배인의 거주지, 형량을 기준으로 配所를 정했다. 즉 출발지를 기준으로 거리의 원근을 나누어, 출발지역 인근 고을을 피하고 유2000리, 유2500리, 유3000리 등 유배형의 세 등급에 따라 유배지를 배정하였다. 유배지 배정 규정은 이후 계속 바뀌게 되는데, 적어도 이 세종대에는 세종 12년의 규정이 준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평안도로 보내지는 대상 유배인은 서울·개성(留後司)·경기도·황해도·함길도의 流二千里 죄인, 서울·개성·경기도·강원도의 流二千五百里 죄인, 서울·개성·경기도·강원도의 流三千里 죄인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에서 유배인이 보내지고 있지만,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하삼도 거주자는 평안도로 유배를 보내지 않도록 한 것이 흥미롭다. 그렇지만 하삼도의 먼 지역 죄인들을 왜 평안도로 배정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세종 12년에 유배지 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국사범의 경우는 평안도, 함경도의 변경 지역에 유배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두었다. 즉, 평안도의 麟山·理山 이북의 연변 고을과 함길도의 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에는 유배나 충군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니,[19] 청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경 지역으로 국사범을 보낼 경우 자칫 이들이 월경을 하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국사범에 대한 평안도 연변 고을로의 유배지 배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이후에도 비교적 잘 지켜진 것 같다. 예컨대, 세조대에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자는 양계(兩界) 연변의 여러 고을에 발배(發配)할 수 없다'는 『경국대전』 규정을 근거로 兩界 연변지역으로의 유배지 배정에 대한 제한 조치가 논의되었고,[20] 광해군 5년에도 이같은 방침이 재확인되었다.[21] 아무튼 정치범 등 특별한 경우 평안도 국경 인근 군현으로의 유배지 배정 제한이 있었지만, 이 외에는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평안도 여러 군현이 유배지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평안도 배소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참고로 서울에서

18)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제1장 참조.
19) 『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 윤12월 정미.
20) 『世祖實錄』 권25, 세조 7년 7월 을묘.
21) 『光海君日記』 권69, 광해군 5년 8월 갑진.

출발하여 평안도 42개 지역으로의 유배 노정을 19세기의 『義禁府路程記』(奎 19531)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평안도 42官의 유배 일정

| 日程 | 郡縣 |
|---|---|
| 6일 | 中和 |
| 6.5일 | 平壤 |
| 7일 | 江西, 三和, 龍岡, 順安, 祥原 |
| 7.5일 | 甑山, 三登, 江東, 咸從, 永柔, 慈山 |
| 8일 | 肅川, 順川, 成川, |
| 8.5일 | 殷山, 安州 |
| 9일 | 价川, 嘉山, 博川, 寧遠 |
| 9.5일 | 泰川, 雲山 |
| 10일 | 德川, 郭山, 龜城 |
| 10.5일 | 定州 |
| 11일 | 寧邊, 宣川, 陽德, 熙川 |
| 12일 | 鐵山, 朔州, 龍川 |
| 13일 | 義州, 孟山 |
| 14일 | 昌城 |
| 15일 | 江界 |
| 15.5일 | 碧潼 |
| 16일 | 楚山 |
| 17일 | 渭原 |

『의금부노정기』에는 의금부에서 유배를 보내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도성을 출발하여 각 유배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일정이 적혀 있다. 즉, 책에는 도성에서 출발하여 각 도의 각 군현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정, 해당 군현에 도착하기까지 경유해야 할 驛名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은 최소 반일(0.5일)에서 2일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황해도는 3일에서 6일, 강원도는 2일에서 최대 11일, 충청도는 2일에서 5.5일, 전라도는 5일에서 최대 13일, 경상도는 4.5일에서 11.5일, 함경도는 6.5일에서 최대 24.5일 일정이며, 평안도의 경우 위의 <표 2>에서 정리해놓았듯이 도성에서 출발하여 평안도 각 군현에 도착하기 까지 최소 6일에서 최대 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금부노정기』에 따르면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도의 양천, 시흥, 과천 등이 반일 일정으로 가장 짧았던 데 비해, 전라도 지역의 경우 도성에서 배소까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 13일 일정의 제주도였다. 경상도에서 가장 먼 곳은 거제, 남해로 11.5일 일정이었고, 전국을 통틀어 유배지까지 가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곳은 함경도 경흥 지역으로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24.5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추어 <표 2>의 평안도 지역을 볼 때 평균 10일 전후가 소요되며, 평안도 42개 군현 가운데 강계·벽동·초산·위원 등은 제주도보다 긴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하삼도를 비롯한 여타 다른 도에 비해 유배지로의 이동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노정이 긴데다가, 평안도 두만강 연안의 변경 군현의 경우 제반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안도는 함경도와 마찬가지로 유배인들에게는 척박한 유배지의 하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 3. 평안도 사례를 통해 본 19세기 전반 유배의 실제

### 1) 『평안감영계록』 순조대 유배 기사의 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관찰사는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형사범에 대해 자체적으로 流刑 이하의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중앙이나 다른 도에서 이송된 유배인들을 여러 고을에 배정하고 이들의 유배지 생활을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당시 감영에서 국왕에 올린 보고서를 모아놓은 감영 啓錄 자료 중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하 분석하게 될 『평안감영계록』에는 평안도 관찰사가 관내에 정배온 유배인의 처리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평안감영에서 관내 군현으로 정배되어 온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 행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계록에 이같은 기록이 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근거를 법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大典會通』 규정에 따르면 조선초기부터 지방 감영에서 죄인을 다른 지역으로 유배보낼 때 관찰사는 刑曹에 移文을 보내 해당 사실을 기록해두도록 했으며, 관내 고을로 죄인이 유배올 경우 관찰사는 유배인의 罪名 및

配所에 도착한 날짜를 狀啓로 국왕에 보고하도록 하였다.[22]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평안도 관찰사는 관내 죄인을 유배 보내거나 다른 도에서 죄인이 귀양 올 경우 모두 조정에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계록에 소상하게 실리게 된 것이다.

이제 『평안감영계록』에서 평안도 관내로 유배온 죄인들의 내역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분석 범위는 1830년부터 1834년까지 걸쳐 있는 순조대의 기사 총 5책인데,[23] 앞서 언급하였듯이 4년에 걸쳐 있지만 중간에 누락된 달을 제외하면 모두 29개월간의 기록이다.

<표 3>에서 <표 6>은 제1책부터 제5책까지에 실려 있는 평안도 지역에 押送되어 온 유배인의 인적사항, 범죄 내용, 형량과 애초 發配地, 정배된 郡縣, 배소 도착 일자 등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필자는 아래 표에서 유배형 뿐 아니라 徒刑, 充軍을 선고받고 평안도에 定配되어 온 자들도 함께 정리했다는 사실이다. 감영 계록 자료에서는 도형과 유형 정배인의 경우 별다른 구분 없이 배소 및 보수주인의 지정, 到配 현황 보고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에 함께 넣어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24]

<표 3> 제1책 유배인 명단(1830년 8월-12월)

| 죄인 성명 | 죄인 신분직역 | 범죄 내용 | 형량 | 발배지 | 발배일 | 정배지 | 배소 도착일 | 비고 |
|---|---|---|---|---|---|---|---|---|
| 김수해 | | 강간미수 | 장100 유3천리 | 함경 함흥 | 7. 24 | 곽산 | 8. 14 | |
| 윤태형 | 鄕班 | 토호로서 백성침학 | 〃 | 경상 거제 | 7. 24 | 강동 | 8. 22 | |
| 박종현 | | 장례 때 山主 구타치사에 참여 | 〃 | 공충 목천 | 8. 5 | 양덕 | 8. 24 | |
| 양대의 | 殯宮次知內官 | 미상 | 극변정배 | 의금부 | 8. 7 | 벽동 | 8. 21 | |
| 김승업 | 殯宮次知內官 | 미상 | 〃 | 의금부 | 8. 7 | 위원 | 8. 22 | |

22) 『大典會通』 권5, 刑典 「推斷」 "凡徒流付處安置定屬人 本曹置簿 他司及外方定配罪人 亦移文本曹置簿 憑考檢擧 京外罪人到配後 該道觀察使擧其罪名及到配日字 狀開 (補)發配日子 亦爲登聞"

23) 참고로 『淸選考』의 기록을 통해 해당 시기 평안감사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799년부터 1801년까지는 李泰永, 1801년부터 1803년까지는 金勉柱, 1803년부터 1804년까지는 金文淳, 1804년부터 1805년까지는 李書九가 각각 평안감사를 역임하였다.

24) <표 3>에서 <표 6>까지를 보면 동일한 범죄의 공범관계에 있는 죄인들이 일부 확인된다. 예컨대 <표 5>의 김두원, 노재관, 유원익, 홍아가노미, 우인득이 이에 해당하는데, 동일 행위에 대해 범죄 형량과 配所 등이 다르게 나온다. 이 경우 형량과 배소에 왜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에 관한 검토는 하지 못했다.

| | | | | | | | | |
|---|---|---|---|---|---|---|---|---|
| 장인복 | | 馬牌 위조하여 암행어사 사칭 | 장100 유3천리 | 경상 경주 | 7. 28 | 자산 | 9. 2 | |
| 최백출 | | 강도미수 및 상해 | 〃 | 강원 울진 | 7. 19 | 창성 | 8. 28 | |
| 김평근 | | 무덤 私掘 | 〃 | 공충 옥천 | 8. 4 | 곽산 | 9. 6 | |
| 조득련 | | 무덤 私掘 | 장100 도3년 | 전라 영광 | 8. 11 | 태천 | 9. 18 | |
| 권연손 | | 저주 및 무고로 자살을 야기함 | 장100 유3천리 | 경상 대구 | 8. 11 | 강서 | 9. 14 | |
| 김이희 | | 무덤 私掘 | 장100 도3년 | 황해 재령 | 9. 12 | 태천 | 9. 20 | |
| 황복지 | | 喪中에 강간미수 | 장100 유3천리 | 경상 안동 | 9. 11 | 성천 | 10. 6 | |
| 최종륜 | | 사망으로 위장하여 훈련도감 軍卒 免脫 | 〃 | 형조 | 9. 13 | 정주 | 10. 7 | 당초배소 : 벽동 |
| 천일호 | | 한성부 牌旨 위조하여 토색질 | 〃 | 경상 안동 | 8. 29 | 삼화 | 10. 5 | 당초배소 : 양덕 |
| 황계용 | | 폭행치사 사건의 종범 | 〃 | 전라 구례 | 9. 29 | 박천 | 10. 27 | |
| 우춘원 | | 낫을 분실하고 엉뚱한 成班을 의심 자살케함 | 변방충군 | 경기 적성 | 11. 24 | 구성 | 12. 15 | |
| 김학득 | 常賤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경상 상주 | 11. 5 | 가산 | 12. 16 | |

<표 4> 제2책 유배인 명단(1831년 7월-12월)

| 죄인 성명 | 죄인 신분직역 | 범죄 내용 | 형량 | 발배지 | 발배일 | 정배지 | 배소 도착일 | 비고 |
|---|---|---|---|---|---|---|---|---|
| 서광일 | 班族 | 고용살이하는 집의 處女를 潛奸하려 헛소문 퍼뜨림 | 변지충군 | 경상 상주 | 6. 13 | 삼등 | 7. 5 | |
| 윤시형 | 鎭吏 | 평민의 妾과 통간하고 鹽盆을 늑탈 | 장100 유3천리 | 공충 태안 | 6. 16 | 삼화 | 7. 28 | |
| 박삼이 | | 李班과 다투다 醜說 퍼뜨리고 무고 | 변지충군 | 공충 서원 | 5. 29 | 강계 | 7. 4 | 당초배소 : 위원 |
| 정석빈 | | 시부모의 문기 위조 寡女 강간 미수 | 장100 유3천리 | 강원 정선 | 7. 6 | 영변 | 7. 25 | 당초배소 : 위원 |
| 하명욱 | 邑吏 | 番錢 포흠 | 〃 | 전라 나주 | 7. 20 | 위원 | 8. 20 | |
| 문완준 | 倉色 | 米錢 포흠 | 〃 | 광주유수 | 7. 27 | 창성 | 8. 21 | |
| 지계원 | | 妖誕한 말로 혹세무민 | 〃 | 형조 | 9. 16 | 맹산 | 10. 6 | |
| 성욱이 | | 구타치사 사건의 종범 | 〃 | 경상 창녕 | 9. 14 | 선천 | 10. 17 | 당초배소 : 정주 |

| | | | | | | | | |
|---|---|---|---|---|---|---|---|---|
| 문낙구 | 班民 | 재물 騙取 | 〃 | 전라 옥구 | 9. 28 | 자산 | 10. 29 | 당초배소 : 숙천 |
| 한광조 | 봉상시 員役 | 貢價를 속여 偸賣 | 〃 | 형조 | 10. 30 | 성천 | 11. 17 | |
| 양학종 | 社倉色 | 환곡 유용 | 〃 | 전라 장성 | 10. 15 | 강서 | 11. 21 | |
| 김완길 | | 구타치사 사건의 종범 | 〃 | 황해 해주 | 10. 28 | 삭주 | 11. 17 | |
| 박맹손 | | 무덤 私掘 | 〃 | 경상 곤양 | 11. 12 | 박천 | 12. 19 | |
| 이해관 | | 官廷에서 推鞫할 때 수령에 발악 | 장100 도3년 | 강원 삼척 | 11. 18 | 양덕 | 12. 18 | |

<표 5> 제3-4책 유배인 명단(1833년 1월-12월)

| 죄인 성명 | 죄인 신분직역 | 범죄 내용 | 형량 | 발배지 | 발배일 | 정배지 | 배소 도착일 | 비고 |
|---|---|---|---|---|---|---|---|---|
| 함인성 | 금위영 營屬 | 犯葬을 도와주고 護喪한 죄 | 장100 유3천리 | 형조 | 미상 | 강계 | 11. 29 | |
| 박명현 | | 무덤 私掘 | 〃 | 강화유수 | 12. 13 | 초산 | 1. 3 | 당초배소 : 벽동 |
| 이재이 | | 官穀 농단 | 〃 | 형조 | 12. 20 | 중화 | 1. 14 | |
| 이창원 | | 무덤 私掘 | 〃 | 황해 신계 | 1. 9 | 곽산 | 1. 19 | |
| 이대규 | | 금령을 어기고 潛居 | 〃 | 형조 | 12. 25 | 초산 | 1. 15 | |
| 임주운 | | 殺獄 죄인 | 〃 | 전라 영광 | 1. 4 | 영유 | 1. 27 | 정배주체 : 국왕 |
| 갈흥석 | | 소 도살 | 장100 유2천5백리 | 형조 | 1. 13 | 곽산 | 2. 2 | |
| 이규남 | 前僉使 | 금령 위반(犯禁) | 변원정배 | 의금부 | 1. 26 | 삭주 | 2. 13 | |
| 남산수 | 醫官 (御醫) | 犯釀하여 판매하다 적발 | 원지정배 | 형조 | 1. 25 | 양덕 | 2. 25 | |
| 김두원 | | 陵軍과 함께 獻陵 소나무 斫伐 | 장100 도3년 | 광주유수 | 2. 15 | 순천 | 2. 26 | |
| 노재관 | | 陵軍과 함께 獻陵 소나무 斫伐 | 〃 | 광주유수 | 2. 16 | 희천 | 3. 2 | |
| 유원익 | 陵軍 | 頑民과 부동하여 獻陵 소나무 斫伐 | 〃 | 광주유수 | 2. 18 | 구성 | 3. 3 | |
| 홍아가노미 | 陵軍 | 頑民과 부동하여 獻陵 소나무 斫伐 | 장100 유3천리 | 광주유수 | 2. 17 | 삭주 | 3. 4 | |
| 우인득 | 陵軍 | 頑民과 부동하여 獻陵 소나무 斫伐 | 〃 | 광주유수 | 2. 16 | 창성 | 3. 4 | |

| | | | | | | | | |
|---|---|---|---|---|---|---|---|---|
| 윤행득 | | 官差 사칭하여 촌민 재산 토색질 | 장100 도3년 | 황해 해주 | 2. 26 | 운산 | 3. 4 | |
| 이수장 | | 寡女 강간미수 및 상해 | 장100 유3천리 | 경상 거제 | 2. 9 | 양덕 | 3. 10 | |
| 정험상 | | 宰相 편지 위조하여 殘民 침학 | 변원정배 | 형조 | 2. 30 | 순안 | 3. 13 | |
| 손인득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경기 포천 | 2. 12 | 은산 | 3. 12 | 당초배소 : 개천 |
| 신웅모 | | 무덤 私掘 | 〃 | 공충 공주 | 3. 12 | 숙천 | 3. 24 | |
| 이무우리 | | 廛肆에서 소란피고 민가 부순 죄 | 원악지 충군 | 형조 | 3. 16 | 철산 | 3. 27 | |
| 이장한 | | 廛肆에서 소란피고 민가 부순 죄 | 〃 | 형조 | 3. 12 | 양덕 | 4. 5 | |
| 김천석 | | 廛肆에서 소란피고 민가 부순 죄 | 〃 | 형조 | 3. 12 | 초산 | 4. 2 | |
| 이삼득 | | 傭租 문제로 다투다 雇人 구타치사 | 장100 유3천리 | 전라 용담 | 4. 10 | 중화 | 5. 1 | |
| 박치권 | | 부부싸움하다 어린아들 구타치사 | 장60 도1년 | 황해 수안 | 4. 28 | 상원 | 5. 2 | |
| 최봉려 | 雜穀廛人 | 여객주인이 곡식에 물탄 것을 알고도 은닉 | 원악지 정배 | 형조 | 4. 13 | 맹산 | 4. 28 | |
| 이증번 | | 牌旨 위조하여 殘民 조종 | 장100 유2천5백리 | 형조 | 4. 25 | 삼화 | 5. 7 | |
| 김달엽 | | 간통 현장 적발하자 아들며느리 강소사 수치로 음독자살 | 장100 도3년 | 함경 덕원 | 4. 24 | 용천 | 5. 16 | |
| 최판남 | 賤流 | 이웃 처녀를 유인하여 富戶에 팔려다 미수 | 장100 유3천리 | 공충 석성 | 4. 29 | 삼화 | 5. 21 | |
| 이방영 | 西倉色吏 | 진휼곡식 유용 | 장80 도2년 | 황해 봉산 | 5. 6 | 덕천 | 5. 20 | |
| 강내환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황해 강령 | 5. 25 | 맹산 | 6. 3 | |
| 김춘근 | | 술주정하다 구타치사 | 〃 | 공충 은진 | 5. 22 | 상원 | 6. 19 | |
| 조득이 | | 墓所 나무 斫伐 | 엄형정배 | 형조 | 5. 25 | 운산 | 6. 17 | |

| | | | | | | | | |
|---|---|---|---|---|---|---|---|---|
| 김종한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전라<br>무장 | 5. 29 | 희천 | 6. 22 | |
| 안동철 | | 무덤 私掘 | 장100 도3년 | 황해<br>해주 | 6. 21 | 개천 | 7. 4 | |
| 조영락 | 吏房 | 환곡 유용 | 장100 유3천리 | 경상<br>진해 | 5. 19 | 중화 | 7. 14 | |
| 김문진 | 우병영<br>首鎭撫<br>(由吏) | 관물 유용 등 | 〃 | 경상<br>진주 | 6. 17 | 은산 | 7. 17 | 당초배소 :<br>개천 |
| 박처순 | | 封山의 禁松 작벌 | 감사정배 | 황해<br>옹진 | 7. 24 | 가산 | 8. 12 | |
| 이순재 | | 향리와 결탁하여<br>稅布 고리로<br>운영하여 勒捧 | 장100 유3천리 | 함경<br>명천 | 8. 4 | 양덕 | 8. 19 | |
| 공복섬 | | 촌민 침학 | 〃 | 경상<br>진주 | 7. 27 | 숙천 | 8. 25 | |
| 김수득 | | 무덤 私掘 | 〃 | 전라<br>부안 | 7. 25 | 희천 | 8. 25 | |
| 고태준 | 吏屬 | 수령에 앙심품고<br>동헌에서 侵辱 | 원지정배 | 공충<br>공주 | 8. 7 | 함종 | 8. 27 | 암행어사<br>에 적발 |
| 진재손 | | 숙질과 다투다<br>오촌고모 구타<br>상해 | 장100 유2천리 | 경상<br>영양 | 8. 19 | 선천 | 9. 25 | |
| 채홍면 | 前察訪 | 驛屬의 토지 헐가<br>늑탈하고 災結<br>빼았음 | 장100<br>유2천5백리 | 의금부 | 9. 9 | 운산 | 10. 3 | 어사에<br>적발 |
| 박종길 | 景慕宮<br>望祭大祝 | 경모궁 제향 소홀 | 竄配 | 의금부 | 9. 21 | 선천 | 10. 4 | |
| 택신 | 官奴 | 公貨 유용 | 장100 유3천리 | 황해<br>해주 | 9. 16 | 용천 | 10. 10 | |
| 홍경운 | | 무덤 私掘 | 〃 | 형조 | 10. 2 | 안주 | 10. 23 | |
| 류석화 | | 무덤 私掘 | 〃 | 황해<br>황강 | 10. 23 | 강동 | 11. 1 | |
| 이인목 | 坊任 | 結錢 포흠 | 〃 | 황해<br>봉산 | 10. 28 | 순천 | 11. 12 | |
| 원시만 | 창덕궁<br>內官 | 失火 | 원지정배 | 의금부 | 10. 25 | 박천 | 11. 15 | |
| 조윤봉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전라<br>영암 | 10. 6 | 삼화 | 11. 14 | |
| 이장활 | 창덕궁<br>內官 | 失火 | 원지정배 | 의금부 | 10. 25 | 운산 | 11. 15 | |

| | | | | | | | | |
|---|---|---|---|---|---|---|---|---|
| 이종량 | 坊任 | 공물 포흠 | 장100 유3천리 | 황해 봉산 | 10. 28 | 덕산 | 11. 15 | |
| 김치성 | | 무덤 私掘 | 〃 | 전라 진안 | 11. 10 | 상원 | 11. 30 | |
| 강위상 | 창덕궁 內官 | 失火 | 원지정배 | 형조 | 10. 22 | 벽동 | 11. 21 | |
| 김연택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전라 운봉 | 11. 6 | 삼화 | 12. 3 | |
| 임지택 | 宮沓 佃夫 | 災結 유용 | 〃 | 황해 재령 | 11. 15 | 선천 | 11. 29 | |
| 김억지 | | 물에 빠져 죽는 사건 발생하자 官家에 책임을 묻고 발악 | 장100 도3년 | 경상 의성 | 10. 29 | 태천 | 12. 3 | |
| 김취영 | | 妖書 암송 | 장100 유3천리 | 형조 | 11. 9 | 자산 | 12. 7 | 당초배소 : 개천 |

<표 6> 제5책 유배인 명단(1834년 7월-12월)

| 죄인 성명 | 죄인 신분직역 | 범죄 내용 | 형량 | 발배지 | 발배일 | 정배지 | 배소 도착일 | 비고 |
|---|---|---|---|---|---|---|---|---|
| 미상 | 倉色 | 公貨 유용 | 장100 유3천리 | 경상 대구 | 5. 4 | 초산 | 6. 15 | |
| 김광룡 | | 무덤 私掘 | 〃 | 경상 용궁 | 6. 22 | 순안 | 7. 9 | |
| 남한익 | | 무덤 私掘 | 〃 | 경상 의흥 | 5. 15 | 삭주 | 7. 9 | |
| 주상욱 | | 무덤 훼손 | 장100 도3년 | 경상 칠원 | 6. 15 | 안주 | 7. 13 | |
| 양성철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경상 단성 | 6. 29 | 철산 | 8. 2 | |
| 윤창운 | | 양반 과부집(班寡)에서 소란피고 추문 퍼뜨려 자살케 함 | 〃 | 강원 원주 | 6. 13 | 초산 | 8. 6 | |
| 최규오 | | 宮差 가칭하고 촌민 침학 | 장100 도3년 | 공충 서원 | 7. 20 | 삭주 | 8. 22 | |
| 박상붕 | | 舊上典을 빙자하여 속노비 토색질 | 장100 유3천리 | 황해 해주 | 8. 8 | 순안 | 8. 27 | |
| 김득춘 | | 분실한 물건 훔친 혐의를 씌워 사람 난타하고 고문한 죄 | 변원충군 | 공충 전의 | 7. 28 | 희천 | 8. 26 | |
| 김학조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함경 안변 | 8. 23 | 선천 | 9. 7 | |
| 정대일 | | 監試 覆試에 初試 없이 참석 | 변원충군 | 형조 | 7. 23 | 초산 | 9. 8 | |
| 김중려 | 面任 | 포흠 | 장100 유3천리 | 황해 해주 | 8. 30 | 정주 | 9. 17 | |

| | | | | | | | | |
|---|---|---|---|---|---|---|---|---|
| 김희성 | 司鑰(液屬) | 醫女 도망을 도움 | 원지정배 | 형조 | 8. 30 | 개천 | 9. 17 | |
| 홍억설 | | 조카와 공모하여 악행 일삼는 姪子 구타살해 | 장100 도3년 | 경상 함안 | 9. 6 | 상원 | 10. 3 | |
| 문윤행 | 司謁(液屬) | 醫女 도망을 도와줌 | 원지정배 | 형조 | 8. 30 | 가산 | 10. 5 | |
| 신희영 | 班族 | 이웃 토색 | 장100 유3천리 | 형조 | 9. 1 | 곽산 | 10. 11 | |
| 류득성 | | 무덤 私掘 | 〃 | 경상 초계 | 9. 16 | 강계 | 10. 10 | |
| 김세필 | | 무덤 私掘 | 〃 | 전라 부안 | 9. 21 | 덕천 | 10. 22 | |
| 박연이 | | 무덤 私掘 | 〃 | 경상 안동 | 9. 22 | 철산 | 10. 22 | |
| 정맹린 | 色吏 | 상납할 돈 횡령 | 〃 | 경상 봉화 | 10. 13 | 태천 | 11. 6 | |
| 김등걸 | | 평소 원한있는 자를 구타, 물에 넣어 치사 | 〃 | 전라 나주 | 10. 14 | 상원 | 11. 11 | |
| 오형록 | | 무덤 私掘 | 장100 도3년 | 황해 장연 | 10. 24 | 구성 | 11. 10 | |
| 김중물억 | | 무덤 私掘 | 장100 유3천리 | 경상 상주 | 10. 28 | 함종 | 11. 24 | |
| 정손이 | | 형 피살되자 가해자에게 돈을 뜯고자 부녀 고문 | 장100 도3년 | 경상 풍기 | 10. 14 | 강계 | 11. 15 | |
| 만석 | 官奴 | 미상 | 엄형정배 | 형조 | 10. 27 | 숙천 | 11. 23 | |
| 차상완 | 結錢色吏 | 공납전 횡령 | 장100 유3천리 | 공충 청안 | 11. 15 | 강서 | 12. 5 | |
| 김효근 | | 무덤 私掘 | 〃 | 공충 천안 | 11. 7 | 강서 | 11. 27 | |
| 신응졸 | 鄕品 | 향곡을 무단하고, 체포되서는 감영에 誣訴하는 등 행위 | 〃 | 황해 서흥 | 11. 12 | 양덕 | 11. 25 | |
| 안가설 | | 박여인과 화간하다 탄로, 박여인 자살 | 변원충군 | 경상 함안 | 11. 11 | 태천 | 12. 14 | |

위의 표에 나오는 평안도에 이송된 유배인 내역은 『평안감영계록』에서 평안감사가 국왕에 보고하는 문서 가운데 유배인 도착 보고 狀啓에서 추출한 것이다. 앞서 법전을 살펴보았듯이 각 도에서는 유배인이 도착할 경우 관찰사는 조정에 즉시 유배인 도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평안감영계록』에 실린 유배인 도착에 관한 관찰사의 보고문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장계에는 1) 먼저 유배를 보내는 지역의 감사가 보낸 移文 혹은 의금부·형조의 關文이 등장하는데, 죄인의 범죄 사실, 檢律 등의 조율에 의거한 형량 확정,

유배지 및 압송 날짜 결정 후 평안도관찰사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 협조 공문을 받은 평안감사는 配所로 결정된 관내 해당 고을 수령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유배인 처리를 지시하는 關文을 내린다. 3) 최종적으로 유배인이 배소로 지정된 고을에 도착하면 평안도 관내 수령은 유배인 관리를 맡은 保授主人을 지정한 후 죄인의 도착 날짜 등을 적어 감영에 다시 牒呈을 올린다. 4) 마지막으로 평안도관찰사는 이들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조정에 유배인 배소 도착 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위의 표 <표 3>에서 <표 6>에 등장하는 유배인 수를 집계해보면 중앙이나 다른 도에서 평안도 지역으로 유배온 죄인의 수가 모두 29개월 동안 총 118명에 달한다. 한 달에 평균 4명꼴로 평안도에서 유배인을 받은 셈인데, 유배인의 처소 마련 및 관리를 해당 도에서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유배인 118명을 發配地, 즉 경외의 어느 곳에서 평안도로 유배왔는지를 좀더 알기 쉽게 도표화한 것이 <표 7>이다. 편의상 광주유수부(6명)와 강화유수부(1명)는 경기도에 포함시켜 계산했다.

<표 7> 發配地 현황

| | 서울 | | | 지방 | | | | | | | |
|---|---|---|---|---|---|---|---|---|---|---|---|
| | 의금부 | 형조 | 합계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도 | 공충도 | 전라도 | 함경도 | 황해도 | 합계 |
| 유배인 수(명) | 7 | 23 | 30 | 4 | 9 | 27 | 12 | 14 | 4 | 18 | 88 |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發配地는 서울에서 30명, 지방에서 88명이다. 서울 30명 가운데는 의금부 7명, 형조 23명이다. 지방의 경우 각 도별로 정배 보낸 숫자를 많은 순서대로 적으면 경상도 27명, 황해도 18명, 전라도 14명, 충청도 12명, 경기도 9명, 강원도·함경도 각 4명 순이다. 지방의 경우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죄인이 이곳에 유배왔으며, 하삼도 및 황해도에서 평안도로의 정배가 집중된 셈이다.

이로써 평안도에 유배온 자들은 중앙보다 각 지방에서 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의 경우에도 관원을 대상으로 한 義禁府보다는 非官人을 관할하는 刑曹에서 평안도로 유배보낸 숫자가 3배 이상 많다.

관원을 다루는 王獄인 의금부의 사법 행정은 모두 국왕의 傳旨를 받들어 거행하므로 유배형도 국왕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반면 형조나 지방 감영의 경우 殺獄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국왕의 최종 재가를 거쳐 형을 확정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례로 제시된 것들은 상당수가 형조판서나 관찰사가 유배형을 直斷한 경우들

이다.[25] 유배형에 관한 기록이 주로 양반 관원 신분의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지만, 실은 의금부의 보고를 거쳐 국왕이 처리한 유배인의 숫자가 유배인 전체 분포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필자가 강조한 대로 유배형 연구가 정치범에 머물지 않고 감영 단위에서 형이 확정되어 정배된 유배인에까지 시야를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표 8> 죄인을 發配한 군현 분포

| 도 | 군현 |
|---|---|
| 강원도 | 삼척, 울진, 원주, 정선(이상 각 1명) |
| 경기도 | 강화, 적성, 포천(이상 각 1명), 광주(6명) |
| 경상도 | 경주, 곤양, 단성, 봉화, 영양, 용궁, 의성, 의흥, 진해, 창녕, 초계, 칠원, 풍기(이상 각 1명), 거제, 대구, 함안(이상 각 2명), 상주, 안동(이상 각 3명) |
| 공충도 | 목천, 석성, 옥천, 은진, 전의, 천안, 청안, 태안(이상 각 1명), 공주, 서원(이상 각 2명) |
| 전라도 | 구례, 무장, 영암, 옥구, 용담, 운봉, 장성, 진안(이상 각 1명), 나주, 부안, 영광(이상 각 2명) |
| 함경도 | 덕원, 명천, 안변, 함흥(이상 각 1명) |
| 황해도 | 강령, 서흥, 수안, 신계, 옹진, 장연, 황강(이상 각 1명), 재령(2명), 봉산(3명), 해주(6명) |

그럼 타 도에서 평안도로 配所가 정해져 유배온 죄수들의 發配地 군현은 어떠했을까? 이를 정리한 것이 <표 8>인데, 각 도별 군현별 發配 현황을 제시하였다. 발배지는 평안도를 제외한 7개도의 여러 군현에 걸쳐 있는데, 앞서 소개한 하삼도 지역 거주자를 평안도로 유배보내지 않도록 규정한 세종 12년의 유배지 배정 규정과 다르다. 이 무렵 타 도의 거의 모든 군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평안도로 유배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유수부와 황해도 해주에서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은 유배인을 평안도로 보냈고, 그 외 경상도 상주와 안동, 황해도 봉산에서 각각 3명, 그리고 여타 군현에서 1, 2명의 유배인을 보내고 있다. 『평안감영계록』에는 유배지 배정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배지 배정의 정확한 원칙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타 도의 여러 군현에서 평안도로 유배인을 보낸 것으로 보아 각 도 관찰사, 혹은 의금부·형조에 의해 편의적으로 配所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25) 의금부와 형조의 사법행정, 특히 범죄자를 照律하여 定配하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오갑균, 앞의 책, 39면 및 140면 참조.

아무튼 다른 도와 비교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단정지을 수 없지만 『평안감영계록』의 순조대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평안도에 매달 평균 네 명 내외의 유배인이 왔다는 점, 그리고 중앙보다는 오히려 지방 각 도에서 보낸 유배인의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은 흥미롭다.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보다 유배인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이해되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안이나 섬 지역, 함경도 변경 지역의 경우 유배인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평안도에 온 유배인의 범죄 유형과 신분, 형량, 그리고 평안도 유배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 2) 『평안감영계록』 분석을 통한 평안도 유배의 양상

앞서 제시한 <표 3>부터 <표 6>는 순조대 총 29개월 동안 평안도에 압송되어 온 도형·유형 정배인 118명 명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유배인의 신분과 범죄 사실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평안감영계록』 자료에는 죄인의 身分이나 職役을 前僉使, 鄕班, 內官, 邑吏, 陵軍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상당수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 죄수들의 신분·직역 전체를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경향성을 읽을 수는 있다.

먼저 의금부에서 발배된 죄인 7명은 前察訪, 前僉使와 함께 殯宮·昌德宮의 內官 등 전·현직 관리와 궁궐에서 근무하는 內官 등이다. 이에 반해 형조 죄수 23명 중에 신분·직역을 알 수 없는 14명을 빼면, 봉상시 員役, 액정서 司謁, 醫官 등과 같은 雜職, 그리고 시전상인의 하나인 雜穀廛人, 官奴 등이 9명이다. 형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직역이 불분명한 나머지 14명도 관직이 없는 자임은 분명하다.

한편, 지방에서 발배된 88명의 경우 班族·班民·鄕班·鄕品이라 기재하여 兩班으로 볼 수 있는 4명, 色吏·倉色·吏房·社倉色·坊任 등 衙前·吏屬 14명, 官奴·賤流 등 賤民 2명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63명은 신분·직역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의금부에서 보낸 유배인이 아니라고 해서 형조와 지방의 유배인 가운데 별다른 신분·직역 표시가 없는 자들을 모두 평, 천민으로 보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후술하듯이 지방에서 유배온 자들 일부는 山訟에 연루된 자들인데, 산송의 경우 대개 양반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유배인의 신분·직역은 각

26) 김경숙의 조선후기 산송 관련 고문서 분석에 따르면 呈訴者의 91.6%, 被訴者의 37.3%가 양반층으로 집

사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아야 좀 더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악된 기록만 가지고도 평안도 유배인들 중에 관원의 비중은 매우 낮았고, 유배 죄수의 많은 수가 평·천민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이들 118명의 범죄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 연구에서 정치범에 대한 유배 사례는 종종 소개되었지만 다른 사례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 『평암감영계록』 속 평안도 유배인을 통해 조선후기 유배인의 대체적인 罪目을 짚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의금부 죄인들의 경우 창덕궁 內官 이장활·원시만이 1833년 궁궐 失火의 책임을 지고 유배에 보내졌다.[27] 이밖에 관리로서는 景慕宮 望祭大祝 박종길은 경모궁의 祭享을 소홀히 한 죄로,[28] 前察訪 채홍면은 驛屬의 토지를 헐가에 늑탈하고 災結을 빼앗은 죄로[29] 유배가 결정된 사례이다.

형조 죄인 23명의 경우는 죄목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금령을 어기고 소를 도살한 죄, 市廛의 廛肆에서 소란을 피우고 民家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죄, 妖誕한 말로 혹세무민하거나 妖書를 암송한 죄 등 사례가 있다. 또한 班族이라는 것을 내세워 이웃집 재산을 토색질한 경우, 官穀을 농단하거나 貢價를 속여서 偸賣하는 등의 횡령을 자행한 관속들도 형조에서 집행한 유배자 명단에 등장한다.

지방에서 유배보낸 사건은 88명이나 되는 만큼 사례가 더욱 다양하다. 이를 굳이 몇 가지로 분류한다면 묘소 私掘 및 禁松 斫伐 등 山訟(34명), 殺獄·강도·강간 등 강력사건(22명), 포흠·횡령·관곡 유용 등 경제범죄(18명), 토호의 무단 행위나 私刑 등 백성 침학 사건(10명), 誣告나 官長 侵辱 등 기타 사건(4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山訟이나 경제범죄로 유배형에 처해진 사례는 조선후기 묘자리를 둘러싼 소송의 증가와 부세 수취과정의 문란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들이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 친족 질서가 강조되고 門中들간의 先山 수호가 강조되면서 이런 것이 발단이 되어 묘자리 다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19세기

---

계될 정도로 산송은 양반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김경숙, 2002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7-46면 참조). 한편, 양반이라 하더라도 관직이 없으면 형조에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형조에서 처리된 자들도 모두 평, 천민으로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1674년 예송논쟁 과정에서 宋時烈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안변에서 유배생활을 한 경기도 수원의 儒生 李必益의 경우도 형조에서 유배길을 관장하였음이 그의 일기에 나온다(김경숙, 앞의 논문(2006), 273-276면 참조).

27) 『平安監營啓錄』 4冊, 癸巳 十一月 二十日.

28) 『平安監營啓錄』 4冊, 癸巳 十月 九日.

29) 『平安監營啓錄』 4冊, 癸巳 十月 八日.

부세 수취 과정에서 三政의 문란과 아전들의 포흠과 수탈이 심각하게 전개되었음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다. 『평안감영계록』의 유배인 죄명 가운데 私掘·掘冢, 세금 逋欠 범죄가 많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전·이속들의 경우는 죄명이 세금 逋欠·관곡 유용 등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 유배인들의 범죄 사실은 묘자리 다툼과 관련한 무덤 私掘, 그리고 殺人·劫姦·毆打 등 폭력 외에도 무고나 촌민 침학·失火·禁松 斫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선후기 유배형이 특정 범죄에 한정하여 집행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지방 군현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범들이 관찰사에 의해 『대명률』과 國典을 바탕으로 照律하여 처리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배인의 세부적인 형량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9>이다. 표에 제시된 '정배' 항목에는 減死定配, 極邊定配, 邊遠定配, 嚴刑定配, 遠惡地定配, 遠地定配, 竄配를 포함하고 있으며, '充軍'의 경우는 邊方充軍, 邊遠充軍, 邊地充軍, 遠惡地充軍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유배인의 형량 분포

| 형량 | 杖60<br>徒1年 | 杖80<br>徒2年 | 杖100<br>徒3年 | 杖100<br>流2000里 | 杖100<br>流2500里 | 杖100<br>流3000里 | 定配 | 充軍 |
|---|---|---|---|---|---|---|---|---|
| 유배인 수(명) | 1 | 1 | 15 | 1 | 3 | 72 | 16 | 9 |

표에서 보듯이 평안도 유배인들의 경우 徒刑(장60 도1년, 장80 도2년, 장100 도3년)은 17명, 流刑(장100 유2000리, 장100 유2500리, 장100 유3000리)은 76명, 定配 16명, 充軍 9명으로 집계되었다.

刑量 분포를 보면 유배인들의 상당수(72명)은 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100 유3000리'의 형벌에 의거하여 평안도로 유배를 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定配(16명)이다. '定配'는 대명률에 나오는 3등급에 나오는 流刑은 아니지만 조선후기 流刑의 한 방식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평안도 유배인의 대부분은 流刑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徒刑과 充軍의 벌로 유배온 인물들도 있지만 전체 합해도 26명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이 중 充軍刑의 경우에는 정배인이 배소에 도착한 후 곧바로 수령이 정배인을 充軍하였다는 사실을 감영에 보고하고 있지만, 여타 徒刑의

경우는 별도의 徒役 부과 사실이 『평안감영계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徒刑이든 流刑이든 정배인이 配所에 도착하면 모두 保授主人을 지정하는 일 외에 특별한 조치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후기 充軍이나 爲奴가 아닌 徒刑 집행의 경우 현재로선 조선초기처럼 특별히 勞役이 부과된 것 같지 않으며, 앞서 오갑균의 지적처럼 도형과 유형의 구분이 사실상 분명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30]

<표 10> 평안도 관내 配所 분포

| 유배인 수 | 配所 |
|---|---|
| 1명 | 덕산, 삼등, 영변, 영유 |
| 2명 | 강동, 개천, 덕천, 벽동, 성천, 순천, 안주, 용천, 위원, 은산, 정주, 함종 |
| 3명 | 가산, 구성, 맹산, 박천, 숙천, 순안, 자산, 중화, 창성, 철산 |
| 4명 | 강계, 강서, 운산, 희천 |
| 5명 | 곽산, 삭주, 상원, 선천, 태천 |
| 6명 | 삼화, 초산 |
| 7명 | 양덕 |

다음은 配所에 관한 내용이다. 평안도로 유배온 분석 대상 118명의 죄인들 관리를 책임진 평안도 관내 配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10>이다. 앞서 『의금부노정기』에는 평안도 군현을 42개 고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는데, <표 10>의 실제 배정된 유배인 배소를 살펴보면 모두 39개 군현에 걸쳐 있다. 따라서 평안도의 거의 모든 군현이 유배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9>의 형량과 <표 10>의 배소와의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뚜렷한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예를 들어 유배인을 5명 맞이한 郭山의 경우 장100 유2500리 죄인 1명, 장100 유3000리 죄인 4명이며, 宣川의 경우 장100 유2000리 죄인 1명, 장100 유3000리 죄인 3명, 정배 죄인 1명 등이다. 장100 유2000리 죄인의 배소보다 장100 유3000리 죄인의 배소가 거리상 서울보다 가깝게 배정된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30) 1834년 11월 헌종 즉위 후 사면령이 내려져서 평안감사가 도내 定配罪人 가운데 석방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명단 중에는 流刑 뿐 아니라 徒刑 죄인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平安監營啓錄』 5冊, 甲午 十二月 十三日). 이처럼 사면령이 내려질 경우에 徒流案에 실린 도형죄인, 유형죄인이 모두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당시 지방에서 도형과 유형 정배인이 큰 차이가 없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분포는 유배인의 배소 결정이 애초 『대명률』의 취지와 달리 거리의 원근이 아니라 다소 편의적 방식으로 분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하나 배소별 유배인 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덕산, 삼등 등 유배인을 단 1명만 받은 군현이 있는 반면, 양덕의 경우에는 무려 7명의 유배인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표 10>의 유배인 숫자가 현재 해당 군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배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배지 배정과 관련하여 정조대에 두 가지 원칙이 세워진 바 있다.[31] 첫째, 재해가 심한 고을은 유배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1784년(정조 8) 흉년이 들어 年分이 尤甚한 재해 지역에는 군현 사정을 고려하여 유배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수교가 그것이다.[32] 둘째, 군현에 보내지는 유배인 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한 고을에 너무 많은 유배인을 보낼 경우 고을에서 이들을 감당할 힘이 부칠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었는데, 1788년(정조 12) 정배 죄인이 한 고을에 10명을 넘을 경우 본도의 다른 고을로 移配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33] 『평안감영계록』을 살펴보면 정조 때 마련한 이들 규정이 이후에도 잘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공충도 서원현에서 醜聞을 퍼뜨려 양반집을 무고했다가 邊地充軍刑을 선고받아 1831년 7월 평안도 강계부에 압송되어 온 박삼이의 경우는 당초 공충감사가 평안도 위원군을 배소로 정하였는데, 위원군에 編配된 자가 이미 10명이 차서 강계부로 移配된 경우이다.[34] 그리고 같은 해 殺獄에 연루되어 경상도 창녕현에서 장100 유3000리형을 선고받아 평안도 선천부로 정배온 성욱이의 경우 원래 경상감사는 평안도 정주목을 배소로 정했으나, 정주의 농사가 흉년이어서 年分이 尤甚한 고을에 속하자 평안감사는 배소를 선천으로 옮긴 사례이다.[35]

이와 같이 <표 3>에서 <표 6>의 비고에 표시한 군현은 위의 예처럼 유배인의 숫자가 10명이 찼거나 年分尤甚邑으로 지정되어 다른 곳으로 유배인을 移配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다. 각도에서 도·유형이 확정되어 정배보내는 유배인을 어느 도 어느 군현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불분명하지만,[36] 적어도 유

31) 심재우, 앞의 논문(2000), 206-207면 참조.

32) 『秋官志』 권7, 考律部 續條二 徒流 「灾邑編配」 ; 『大典會通』 권5, 刑典 「推斷」

33) 『受敎定例』 61條, 「定配滿十 自本道 移配道內數小邑」 ; 『大典會通』 권5, 刑典 「推斷」

34) 『平安監營啓錄』 2冊, 辛卯 七月 十四日

35) 『平安監營啓錄』 2冊, 辛卯 十月 二十三日

36) 필자는 관찰사를 보좌하여 법률 자문을 하고, 유배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檢律이 아닐까 생각한다. 검률은 종9품으로 벼슬은 낮지만 각 도 감영에 한 명씩 배속되어 범죄 사실에 대한 照律과 유배지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관찰사에게 개진하고 있는데, 『평안감영계록』에서도 이들이 유배

배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을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고을에 유배인을 10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재해가 심한 고을의 경우 유배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원칙이 줄곧 지켜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표 11> 유배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일정

| 發配地 | 서울 | | 지방 | | | | | | |
|---|---|---|---|---|---|---|---|---|---|
| | 의금부 | 형조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도 | 공충도 | 전라도 | 함경도 | 황해도 |
| 평균 일정(일) | 17.1 | 22.1 | 35.2 | 19.1 | 31.2 | 25.6 | 28.5 | 16.7 | 14.1 |

配所와 함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發配地에서 평안도 관내 配所까지 걸린 기간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역에서 관내 배소까지의 평균 이동 일정을 도표화한 것이 <표 11>이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배인 118명의 평균 이동 일정을 계산하면 23.8일이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적게 걸린 지역은 서울의 의금부·형조, 지방의 경기도·함경도·황해도이며, 평균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은 강원도·경상도·공충도·전라도이다. 다른 부분은 납득이 가는데 경상도보다 평안도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강원도 유배인의 이동 일정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오는 부분은 다소 의외이다. 강원도 유배인들은 경상도 평균 31.1일보다 4일 정도가 많은 35.2일 걸려 평안도 배소에 도착한 것인데, 강원도의 사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서울의 의금부와 형조 죄인의 일정은 앞서 소개한 『義禁府路程記』와 비교가 가능하다. 앞 장의 <표 2>를 상기시켜 보면 평안도 42개 고을은 서울에서 올 때 최단 6일에서 최장 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 『의금부노정기』의 기록을 고려할 때 표에 제시한 의금부, 형조 죄수들의 평안도 배소까지의 유배노정은 『의금부노정기』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의금부노정기』는 대략의 기준이었지 실제 배소로 이동할 때 꼭 준수해야 할 원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평안감영계록』 수록 118명의 죄인의 처리 문제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평안감사의 정배온 죄인에 대한 관리 문제이다. 配所의 수령은 유배인이 도착하면 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관리를 맡아줄 保授主人을 지정하는데, 『평안감영계록』에 따르면 평안도에서는 관내 유배인을 담당할 보수주인을 모두 職役이 '閑

지를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률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권한과 구체적인 업무 보좌의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良'인 인물들로 선정하고 있다. 아전이나 관속들에게 맡기지 않고 閑良을 택한 것이 특징인데, 이들의 신분적 지위와 역할이 파악되지 않아 보수주인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조선후기 유배인을 담당한 配所의 수령은 유배인이 사망하거나 휴가를 보내줘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영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평안도에서도 본 계록에 의하면 유배인이 病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수령은 정해진 원칙대로 검시를 행했다. 그리고 父母喪에는 정배인에게 휴가를 주어 조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유배인의 物故 및 給由 상황은 감영에 즉각 보고되었고, 감사는 이를 국왕에까지 보고하였음을 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37]

이상 유배인 도착 보고를 시작으로 물고 및 휴가 보고, 중간에 국왕의 지시로 사면 대상 정배인 명단 제출 등 정배인에 관한 사항이 『평안감영계록』의 기록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관찰사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배인의 배소 이송 및 관리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중앙정부와 수령과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지방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법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관내 군현 단위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거나, 중요 사안은 국왕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사의 역할을 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평안감영계록』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타 도에서 평안도 관내로 정배온 죄인에 관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평안감사가 관내 고을의 죄인을 국왕의 지시를 받아 다른 도로 유배보낸 사례도 두 건이 등장한다.

하나는 1833년 도내 용강현에 수감되어 있는 殺獄罪人 김택조에 관한 것인데, 사형 다음의 次律로 처리하라는 국왕의 지시에 의거하여 장100 유3000리형으로 경상도 함양부에 유배보내고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38] 다른 하나는 1834년 도내 상원군 살옥죄인 장인각에 대한 유배 조치이다. 장인각 또한 次律로 처단하라는 조정의 지시를 받아 장100 유3000리형으로 경상도 청송부에 정배하고 있다.[39]

이들 두 사례는 살인 사건, 즉 殺獄이다. 살인 사건의 경우 死刑에 처해질 수

37) 정배인의 病死와 관련한 보고, 정배인을 휴가 보내준 것과 관련한 보고 사례를 하나씩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平安監營啓錄』 3冊, 癸巳 三月 十七日 ; 『平安監營啓錄』 3冊, 癸巳 三月 二十九日).

38) 『平安監營啓錄』 3冊, 癸巳 三月 十七日

39) 『平安監營啓錄』 5冊, 甲午 九月 十八日

있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찰사가 直斷하지 않고 국왕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국왕의 전교에 의거하여 사형에서 감하여 정배 조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啓錄 자료에는 관내 고을에 정배온 유배인 관련 정보 외에도 본 도에서 다른 도에 유배보낸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를 포함한 유배형 집행의 종합적인 양상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안감영계록』 자료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啓錄 및 연대기 기록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유배형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을 개관하고, 조선후기 평안감사가 작성한 『평안감영계록』의 순조대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평안도 지방에서의 해당 시기 유배인 관리, 유배행정의 일단을 추적해보았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중국 법률문화의 영향 속에서 받아들인 五刑의 형벌 가운데 하나로 독특한 형태의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의 유배형 연구는 국왕의 처분으로 귀양 보내진 의금부 관인들에 주로 한정되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양반 관리이며 정치범들이다.

본고는 조선시대 유배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진 유배형 처벌과 유배행정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의 사례연구로 『평안감영계록』의 유배 관련 기사를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계록 자료의 기록도 유배형에 관한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제기한 유배형과 유배행정의 온전하고도 체계적 이해라는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본고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감영계록』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유배형 집행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안도에는 1830년부터 1834년 사이 29개월에 걸쳐 중앙과 다른 지방에서 매달 평균 4명의 유배인이 관내 고을로 압송되어 왔으며, 이들의 배소 도착 및 유배인 관리에 대한 보고가 관찰사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앙의 의금부와 형조에서 유배되어 온 자들보다 다른 道에서 평안도 관내로 유배온 자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는 점, 이들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山訟,

세금 유용이나 逋欠과 같은 대표적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조선후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사범죄들이었다. 평안도가 청나라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중앙의 중요 정치범은 한 명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유배인들의 刑量, 평안도 관내 배소의 분포, 유배지까지 소요된 일정, 保授主人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거나 관행이 정착하면서 유배지 배정 문제, 유배 행정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배지 배정이 세종 12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도별 유배형 집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배지에서의 죄인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등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 형벌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徒刑과 流刑의 차이와 성격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사례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정리가 가능하다.

주지하듯이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판례집, 사례집은 국왕이 판결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예컨대 역모를 꾀한 정치범이나 혹은 강상범·살인범 관련 내용이 많다. 자연히 현재까지 이들 사건이 중점적으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평안감영계록』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 사건의 상당수는 관찰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배형 집행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민의 사회상과 범죄 양상, 사법제도를 규명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감영계록 자료를 비롯한 지방 법률문서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천착을 위한 전제로 연대기 기록에 대한 상세한 조사 또한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본고와 같은 사례 검토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평안감영계록』 전체 시계열에 대한 분석과 지방 감영·군현의 사법 시스템 이해의 심화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평안감영계록(平安監營啓錄)』, 유배형, 유배지, 평안도, 산송(山訟)

**투고일**(2012. 7. 14), **심사시작일**(2012. 7. 25), **심사완료일**(2012. 8. 17)

<Abstract>

# The Nature of the People exiled to the Pyeong'an-do region in the Early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Exile Management in that region

## - Analysis of the events that happened during King Sunjo's reign, recorded in 『Pyeong'an Gam'yeong Gye'rok/平安監營啓錄』 -

Sim, Jae-woo*

Examined in this article is a "Gye'rok/啓錄" material, which was an official report generated by the local offices and then s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Gye'rok' reports serve as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as they would help us define the nature of the 'Punishment of Exile,' and the meaning it had throughout the Joseon society. Also, the local authorities' management of exile cases, as well as the meaning of that 'local management'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n legal adminstration, are all examined here.

This topic was never fully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so a single text was specifically chosen to be examined in this article. Analyzed here is the 『Pyeong'an Gam'yeong Gye'rok』 from the 19th century, currently in custody of the Gyujanggak Archives. Compared to most of the Gye'rok materials that remain today, this text contains great many cases, and also well documented them in a chronological order. This text also most vividly shows us the details which concerned the implementation of exile punishments in the local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out a 29-month period since 1830 through 1834, in average "four" persons a month were exiled to the Pyeong'an-do region, from either the capital or other provinces. It also seems that the task of facilitating the convicts' arrival upon the sites which were designated for their exiled life, as well as filing official reports to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the subsequent management of those exiled people, constituted an important part of the

* 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ocal magistrates' duties.

The number of people who came from other provinces greatly exceeded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sent there from the capital, by either the Euigeum-bu/義禁府 office or the Hyeong-jo/刑曹 Ministry. Their crimes or charges included not only the ones that were related to certain social issues, such as lawsuits that concerned Mountain Cemeteries("Sansong, 山訟"), or the act of abusing collected taxes or neglecting to submit taxes in the first place('Poheum, 逋欠'), but also various criminal cases which were happening throughout the Joseon society in its later day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were no 'political offenders' sent here from the capital, probably because of the location of the Pyeong'an-do province, which was sharing borders with the Chinese Qing dynasty.

This article only examined a single text, which provides us with limit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situation of a single province, Pyeong'an-do in this case, for a limited time period which was the later days of the Joseon dynasty. Yet, even from this limited pool of information, we can clearly see the patterns that were exhibited in the Local Exile adminstration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whereabouts of the exile sites, their crimes that landed them in those exiles, and local managements of the people who were exiled, all shed some light on the subject at hand, and let us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late Joseon's exile punishment, as well as the details of the required operations.

Key Words : 『Pyeong'an Gam'yeong Gye'rok/平安監營啓錄』, Punishment of Exile, the Site for Exile, Pyeong'an-do province, lawsuits that concerned Mountain Cemeteries("Sansong, 山訟")